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심뇌혈관질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조 제1호).
-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).
-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을 5년으로 하고,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·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).
-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진료권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은 ‘중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’로,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은 ‘중등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’로 함(안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).
-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

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필수 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3 신설).

-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,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19조 및 제21조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8조제1항에서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질병관리청장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으므로, 이와 관련된 규정(제2항제7호 및 제3항)에도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.
- 현행법 제19조와 제21조는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위반시 벌칙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규정하고 있는데, 안 제19조와 제21조는 이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제공·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와 위반시 벌칙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으로 변경하고 있음.

- 개별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개인정보의 제공·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¹⁾, 개정안의 내용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적용²⁾이 가능하여 개정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,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련 벌칙이 이미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간 정합성 확보 및 중복·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2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9조(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·제공 제한)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2. 제18조제1항·제2항,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.	제19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사람은 「개 인정보 보호법」 제18 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 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.	제19조(현행과 같음)
제21조(벌칙)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	제21조(벌칙)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21조(현행과 같음)

-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
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